

의안번호	2204568
의 퇴 인	정성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2.
추 계 번호	24F424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서 인공지능
기술 관련 투자 제외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0조 (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)	○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의 경우,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－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데,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0조(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의 경우,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에서 예외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30조)
- 현행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증설투자 및 중견 이상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
 - － 단,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내 증설투자, 기업의 디지털방송을 위한 방송장비 등 동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 허용
 -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법인세수 등의 감소가 예상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인공지능 사업화시설 투자 등의 규모, 해당 투자의 주체인 기업규모와 이익수준,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설투자 현황과 수도권 등 지역별 비중, 투자기업의 규모에 대한 분포 및 이익수준,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현황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
 -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액은 2023년 기준 13.9억달러 수준으로 집계되나,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나 투자기업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여 공제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

[표 1] 2023년 주요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액 규모

(단위: 억달러)

	미국	중국	영국	독일	스웨덴	한국
투자액	672.2	77.6	37.8	19.1	18.9	13.9

자료: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, 'AI Index 2024', 2024.4.

- 또한,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공제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의 기업규모, 향후 이익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 투자를 통한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